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54 발의연월일: 2022. 5. 12.

발 의 자:김민석·강병원·고민정

권칠승 • 박성준 • 송재호

용혜인 • 이용빈 • 임호선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영유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장애위험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②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
	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u>수 있다.</u>
<u> <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